

제211회 영등포구의회
2018년도 제2차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박 미 영 의원 발의】



2018. 12. 12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專 門 委 員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62호로 2018년 11월 13일 박미영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정책의 수립과 시행함에 있어 그 정책이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규정(안 제1조~제2조)
- 나. 성별영향평가의 대상 규정(안 제4조)
- 다.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규정(안 제6조)
- 라.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반영 규정(안 제7조~제9조)
- 마. 성별영향평가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규정(안 제10조~제15조)

바.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규정(안 제16조)

사.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규정(안 제17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근거: 「성별영향평가법」

나. 예산조치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다. 입법예고(2018. 11. 8. ~ 11. 13.)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·개정 하는 법령, 중장기 계획 및 주요 사업 등을 대상으로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된 조례안으로 총 13개의 조항과 2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○ 주요 제정 내용은

- 안 제1조~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

-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

- 안 제4조에서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으로 구청장이 제·개정하는

조례와 규칙, 3년 이상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및 주요 사업 등으로 규정하였고

- 안 제6조에서는 실시 대상별 성별영향평가 시기를 규정하였고
- 안 제7조~제9조까지는 정책별 성비 및 성별 특성, 성평등에 필요한 조치 등 성별영향평가 실시와 평가결과에 대한 정책반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
- 안 제10조~제15조까지는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구성,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
- 안 제16조에서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소관하는 국장을 지정하고 임무를 규정하였으며
- 안 제17조에서는 평가실시를 위하여 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함.

○ 본 조례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「성별영향평가법」이 시행됨에 따라, 우리구의 정책이 실질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, 성별영향평가 제도가 체계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관 련 법 령

■ 『성별영향평가법』

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수립·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3조의2(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"지방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지방위원회의 기능,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